

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황규복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!

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미래통합당 비례대표,

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이성배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

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제정안은,

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
및 교육, 신고·상담 시설 설치 및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
있습니다.

○ 모든 국민은 신체활동을 통하여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선용할 수
있어야 하며, 스포츠 활동과정에서도 「헌법」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,
신체의 자유, 행복추구권, 평등권, 교육 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
있어야 합니다.

-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.
-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체육인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과 동시에 체육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.
- 또한 체육인 인권 교육과 인권위원회 심의,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, 폭행·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의 강요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